

## 품목제조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보고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영업소	명칭(상호)	영업허가번호
	소재지	

제품정보	품목의 유형	주원료의 유형(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제품명	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(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소비가한 제조일부터 일(월, 년)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(뒤쪽에 작성)
	용도·용법	
	보관방법 및 포장재질	
	포장단위	
	성질·상태(성상)	
	품목의 특성	
	·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
	· 살균·멸균 제품 해당 여부	[ ]비살균 [ ]살균 [ ]멸균
· 고열량·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	
·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	
·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	
·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	
·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[ ]에 [ ]아니오	
· [ ]영양성분 조절 제품, [ ]경도 조절 제품, [ ]점도 조절 제품, [ ]해당 없음		

기타	
----	--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조방법설명서 1부 2.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(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소비가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가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. 삭제 <2020. 4. 16.>
------	--

## 1.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

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5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2. 축산물의 영양성분

## ※ 작성방법

가. '내용량'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① 총 내용량당 [     ] ② 100(g 또는 mL)당 [     ] ③ 단위 내용량당 [     ]

나. 가목에 따라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'총 내용량' 또는 '단위 내용량'을 적습니다.

1) ① 또는 ②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만 적습니다.

2) ③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과 '단위 내용량'을 모두 적습니다.

번호	영양성분	내용량		번호	영양성분	내용량	
1	열량		kcal	6	트랜스지방		g
2	나트륨		mg	7	포화지방		g
3	탄수화물		g	8	콜레스테롤		mg
4	당류		g	9	단백질		g
5	지방		g	10	그 밖의 영양성분		

총 내용량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g 또는 mL)

단위 내용량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g 또는 mL)

## 유의사항

1.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(영업인허가번호 11자 - 품목번호 1~ 5자)에 맞아야 하며,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
3. 배합비를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·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(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)만 해당합니다.
4. '축산물의 영양성분'란은 앞쪽의 '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'란에 '예'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.